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4호(2019. 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Vol.14 No.4 December 2019
https://doi.org/10.34122/jip.2019.12.14.4.275

투고일자: 2019년 10월 16일
심사일자: 2019년 11월 8일(심사위원 1), 2019년 10월 23일(심사위원 2), 2019년 10월 30일(심사위원 3)
게재확정일자: 2019년 12월 3일

#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체계 재설정에 관한 연구*

정명철** · 안옥선*** · 이현경****

Ⅰ. 서 론
Ⅱ. 전통지식의 범주와 특성에 대한 국제 논의 고찰
Ⅲ. 국외 전통지식자원 관련 분류체계 검토
1. 국제특허분류(IPC)
2. 인도 전통지식전자도서관(TKDL) 분류체계
Ⅳ.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의 재설정
1. 전통지식 분류체계 구성 원칙 및 방법
2. 기존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 검토
3.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 재설정
Ⅴ. 결 론

* 이 논문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1351001)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
**** 농촌진흥청 박사후연구원(교신저자).

초 록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체결 이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통지식의 보호와 활용이 촉구되면서 전통지식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통지식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2003년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를 재설정하는 데 있다.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발굴되고 수집되는 전통지식의 범주가 확장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kTKRC 재설정 작업은 기존의 kTKRC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포용할 수 없었던 전통지식자원이 포함될 수 있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기존의 kTKRC에서 미흡하게 다루었다고 판단된 창조기술 분야를 대폭 확장하여 다양한 전통문화표현물과 무형문화유산이 전통지식에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Class는 8개에서 13개로 확장되었고, Subclass는 28개에서 72개로 확장되었으며, Group은 105개에서 178개로 확장되었다. 이 연구에서 재설정된 kTKRC가 전통지식자원 발굴 및 DB구축, 자원 관리와 공유를 위해 널리 이용되고,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와 산업적 · 문화적 활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무형문화유산,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 국제특허분류,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 Ⅰ. 서 론

국내외적으로 전통지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 체결 이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통지식의 보호와 활용이 촉구되면서 전통지식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2001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의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국제적 보호 논의를 시작으로 CBD 당사국총회, WIPO 정부간위원회 등에서 전통지식 보호와 권리 부여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전통지식을 새로운 경제자원으로 인식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탈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와 국제규범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1] 이와 함께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자국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 발굴, 분류 및 DB구축, 그리고 지식재산권화와 산업화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인도 전통지식전자도서관(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이하 "TKDL")과 중국 중의약(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이하 "TCM") DB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전통지식자원의 발굴, 가치평가, DB구축 등과 관련된 기반연구를 비롯해 전통지식자원의 활용실태,[2] 전통지식 분류체계 및 보호제도,[3] 전통지식 지식재산권화를 위한 법 · 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4][5] 전통지식 국제적 보호를 위한 DB

1) 한지원 외 2인, "전통 민간요법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인문콘텐츠』 제30호(2013), 249-269면.
2) 농촌진흥청, "전통지식자원 활용실태조사 보고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3.
3) 안윤수 외 2인, "전통지식 분류체계 및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시험연구보고서-농촌자원개발연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6, 490-528면.
4) 안윤수 외 4인, 『전통지식과 지식재산권』, 농촌진흥청, 2009.
5) 강방훈 외 5인(편), 『전통지식도 재산이다―전통지식자원의 권리화와 인증획득 방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0.

구축 및 표준화[6] 등의 연구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국제적으로 전통지식 관련 이익공유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2017년 한국이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를 비준하면서 전통지식자원의 발굴, 보호, 활용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전통지식자원분류(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 이하 "TKRC")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2001년 인도가 TKDL 구축을 위해 TKRC를 개발하면서 촉발되었다. 인도의 TKRC는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이하 "IPC")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 고대 문헌에 수록된 전통의학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한국에서는 2003년 농촌진흥청에서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orean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fication, 이하 "kTKRC")를 개발하였으며, 특허청의 한국전통지식포탈[7]을 비롯해 전통지식자원 발굴과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통지식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2003년에 개발된 kTKRC를 재설정하는 데 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8]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새롭게 발굴되고 수집되는 전통지식

---

6) 조록환 외 6인,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방안 연구(시험연구사업보고서)", 국립농업과학원, 2013.

7) 특허청, "한국전통지식포탈 서비스 소개", 〈www.koreantk.com/ktkp2014/about/introduction.page〉, 검색일 : 2019. 10. 11. 한국특허청은 2004년도에 전통지식 DB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한의학 분야에 대한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전통지식 DB를 구축하였으며, 2007년 12월부터 전통지식 DB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논문 38,632건, 한의학 38,121건, 농업기술 3,082, 생활기술 4,682건, 향토음식 3,236건, 전통식품 14,225건, 전통공예 4,546건 등 522,022건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8)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를 다룬 제3조에는 "이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5조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의 범주가 확장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립수목원의 민속식물 전통지식 조사,[9]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자원 전통지식 조사,[10]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민간요법 조사,[11] 국립무형유산원의 농경·어로 전통지식 조사[12]도 이러한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전통지식 범주의 확장과 관련하여, 실제로 한국전통지식포탈 DB 분류 과정에서 기존의 kTKRC로는 분류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여 2013년 한국특허정보원에서 kTKRC를 일부 개정하여 분류에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kTKRC 재설정 작업에 들어가기 전, 먼저 전통지식의 개념과 범주를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없어 국제적인 논의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정된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의 개념을 비롯해 인접개념인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그 범주까지 가늠해 보았다. 그 다음으로 IPC와 인도의 TKRC 사례를 검토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체계의 구성과 분류코드 부여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kTKRC 재설정을 위해 선행연구[13]와 전통지식 DB를 구축 ·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분류체계와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분류항목들을 추출한 후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며, 3차에 걸친 전통지식 전문가포럼[14]을 통해 세부항목까

9) 정재민 외 8인, “한국의 민속식물-전통지식과 이용”, 국립수목원, 2013. 이 조사사업에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40개 시·군에서 1,768명의 전통지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민속식물 이용정보를 수집하여 10권의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2013년에 한반도 민속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10) 이 조사사업은 2009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국립공원 22개소, 전통마을 74개소, 고문헌 50종을 대상으로 생물자원 전통지식을 발굴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정보검색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11)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 민간요법 발굴조사 보고서―경기도편”, 한국한의학연구원, 2016. 이 조사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민간에 전승되고 있는 전통의약지식을 수집하여 전통 의약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12) 이 조사사업은 2016년 3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통해 ‘농경 · 어로 전통지식’이 무형문화재 범주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추진되었으며, 2017년 전라도를 시작으로 2018년 충청도, 2019년 강원 · 경상 · 제주로 조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13) 장호수, “문화재 분류체계 시론”, 『인문콘텐츠』, 제4호(2005), 78-101면.

14) 2019년 3월 27일, 6월 25일, 8월 21일에 개최되었으며, 2003년 kTKRC 개발자를 비롯

지 꼼꼼하게 검토 · 수정 · 보완한 kTKRC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Ⅱ. 전통지식의 범주와 특성에 대한 국제 논의 고찰

kTKRC 재설정을 위해서는 전통지식의 개념과 범주, 그리고 특성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통지식이 무엇이고, 어떤 자원이 전통지식에 해당되는지 그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류체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통지식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전통지식이 어떻게 생성되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알아야 세부항목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지식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아직까지 없다. 하지만 WIPO 논의를 통해 합의에 근접한 전통지식의 개념을 살펴볼 수는 있다. 2010년 3월 WIPO 정부간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논의된 '전통지식보호 : 개정된 목표와 원칙'에 따르면 "전통지식이란 전통적인 맥락 안에서 지적 활동으로부터 생겨나는 지식의 본질이나 내용과 관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하우, 기술, 개량, 전통지식체계의 일부 형태로서의 학습과 관행, 그리고 세대간 계승되어진 성문화된 지식체계 안에 내포되었거나 또는 토착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담고 있는 지식을 포함할 수 있다"[15]고 규정하고 있다.

WIPO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협의의 개념은 전통적인 상황에서 지적인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지식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노하우, 관행, 기술 및 혁신이 포함된다. 이 경우의 전통지식은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세대를 거쳐 전

---

해 전통지식 DB구축 및 운영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kTKRC의 분류체계와 구성항목을 검토하고 수정 · 보완 사항을 제시해 주었다.

15) WIPO,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Revised Objectives and Principles(WIPO/GRTKF/IC/16/5)",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132330〉. 검색일 : 2019. 9. 23.

승해 온 농업적 · 과학적 · 기술적 · 생태적 · 의학적 지식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식을 말하며 기술적 측면이 강조된다. 광의의 개념은 전통에 기반을 둔 지적 활동을 통해 파생된 산업, 문화, 예술, 과학 분야의 결과물을 포함한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지식적·무형적 문화유산, 관행 및 지식체계 모두를 포함하며, 지식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통지식과 관련된 표시나 상징을 포함한 전통문화표현물 전체를 포괄한다.[16)]

전통지식의 범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전통지식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전통문화표현물과 무형문화유산의 범주도 고려해야 한다. WIPO는 '전통문화표현물'과 '민간전승표현물'을 전통지식과 문화가 표현되거나 전달되면서 나타난 유형 또는 무형의 형태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여기에는 전통음악, 공연, 설화, 이름, 상징, 디자인, 건축양식 등이 해당된다. '전통문화표현물'과 '민간전승표현물'은 서로 대체가능한 동의어이며, 때로는 '전통문화표현물'로 통칭하기도 하며, 'TCEs'로 줄여서 쓰기도 한다.[17)] 따라서 전통문화표현물은 외부로 나타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일정한 형태를 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작권 보호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반면에 전통지식은 지적 활동의 결과인 지식의 내용(content) 또는 실체(substance)로써 특허나 영업비밀로 보호하기에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18)19)] 다음의 〈표 1〉[20)]은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주를 비교한 것이다.

---

16) WIPO, "Glossary of Key Term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WIPO/GRTKF/IC/39/INF/7)",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26069〉, 검색일 : 2019. 9. 23.

17) 위의 글(WIPO/GRTKF/IC/39/INF/7).

18) 이철남,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지적재산권", 아태무형유산센터(편),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동향과 과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10, 289-291면.

19) 양대승, "무형유산의 개념과 특성", 아태무형유산센터(편),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동향과 과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10, 246-247면.

20) 선행연구(정명철 외 3인, "전통지식의 독자적 보호를 위한 국제 논의 고찰", 『농업사연구』, 제11권 제2호(2012), 61-89면)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표 1〉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주

| 구분 | 전통지식<br>(Traditional Knowledge) | 전통문화표현물<br>(TCEs) | 무형문화유산<br>(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
| 개념 | 노하우, 기술, 개량, 전통지식 체계의 일부형태로서의 학습과 관행, 그리고 세대 간 계승되어진 성문화된 지식체계 안에 내포되었거나 또는 토착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담고 있는 지식(제16차 WIPO 정부간위원회 초안규정 제3조2호) | 전통 문화와 지식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대대로 전승되어 온 유형 또는 무형, 또는 유무형의 조합의 모든 형태, 제2조에서 규정된 수혜자의 창의성의 유형 또는 무형의 형태를 말한다. (제17차 WIPO 정부간위원회 조약안) | 공동체, 집단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개인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습 · 표상 · 표현 · 지식 · 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 · 물품 · 공예품 및 문화공간(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 제2조1호) |
| 범주 | ① 농업적 전통지식<br>② 환경적 전통지식<br>③ 의학적 전통지식<br>④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포함<br>※ 산업, 문화, 예술, 과학 분야 포함 | ① 음성적(phonetic), 언어적 표현물<br>② 음악적, 음향적 표현물<br>③ 동작(신체)에 의한 표현물<br>④ 유형적 표현물<br>※ 전통지식 관련 표시, 상징 포함 | ① 구전 전통 및 표현<br>② 공연예술<br>③ 사회적 관습 · 의식 및 제전<br>④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br>⑤ 전통공예기술 |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통지식에는 농업적, 환경적, 의학적 지식과 유전자원 관련 지식, 그리고 산업, 문화, 예술, 과학 분야의 지식을 포함한다. 따라서 농업 외에도 임업, 축산업, 양봉업, 양잠업, 광산업, 어업, 염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전통문화표현물의 음성적 · 언어적 표현물, 음악적 · 음향적 표현물, 동작에 의한 표현물, 유형적 표현물을 비롯해 표시나 상징물도 포함되며,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무형문화유산의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공예기술 등 광범위한 영역의 지식을 포용한다.

그렇다고 모든 지식이 전통지식은 아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지식은 가장 먼저 그 지식이 전통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통적(traditional)'이라는 용어는 지식이 어떤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로 계승되고, 특정 장소나 경관 또는 생태계에서 오랜 경험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에 의해 축적된 것을 말한다.[21] 따라서 지식을 전통으로 만드는 것은 지식이 얼마나 오래되었는

21) Jonathan Curci,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Traditional Knowledge in*

가보다 그 지식이 전통에 기초한 것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세대를 거쳐 전달되고 보존되어 온 방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22] 또한 전통지식은 사용되는 과정에서 개량이 추가된다. 기존의 전통지식에 새로운 소재를 추가하거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것이 개량인데, 전통지식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23]

이러한 전통지식은 생성적 · 기능적 · 형태적으로 시간의 연속성 및 토착성과 관련된 특성을 지닌다. 전통지식은 그 지식을 소유하고 경쟁하면서 자격을 갖는 사람들에게 인간중심적이고 역동적이고 실천적이며,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수되어 문화적 가치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전통지식은 다양성을 촉진시키며, 지역자원에 가치를 부여하여 지역자원을 재생산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24] 이와 관련하여 WIPO 정부간위원회에서 논의된 전통지식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전통지식의 특성**

| 특성 | 특성을 규정하는 요소들 |
|---|---|
| ① 생성적 특성 | •문화적 도출 : 특정한 지역, 문화, 사회와 연계되어 문화적으로 도출되고 개발<br>•역동적 생성 :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역동적으로 생성<br>•공동체 존재 :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온 공동체에 속해 존재함 |
| ② 기능적 특성 | •환경적응적 표준성 : 생태적 · 사회경제적 · 문화적 환경에 적응해 온 실천적인 표준지식<br>•실험적 전수성 : 인간중심적 · 역동적 · 실험적 활동을 통해 차세대로 전수<br>•문화다양성 : 문화적 가치를 지니면서 다양성을 촉진<br>•자원활용성 : 지역자원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원을 재생산 |
| ③ 형태적 특성 | •요소복합성 : 정신적 요소와 실용적 요소의 결합<br>•장르다양성 : 문화적 표현과 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장르 포함<br>•비형식성 :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특성 파악이 가능한 비형식적 성격 |

*International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Cambridge Intellectual Property and Information Law(Series 12), 2010.

22) WTO, "Draft Decision on Traditional Knowledge, annexed to WTO(IP/C/W/404)",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5.aspx〉, 검색일 : 2019. 6. 20.

23) 김병일 외 2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와 지적재산", 『산업재산권』, 제21호(2006), 1-34면.

24) 안윤수 외 4인, 앞의 책, 2009.

첫째, 생성적 특성은 특정한 지역, 문화, 사회와 연관되어 문화적으로 도출되고 개발되어 온 지식이며,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역동적으로 생성되며,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온 공동체에 속해 존재한다. 이는 어떤 의도에 의해 생성되는 '현대적인' 혹은 '서구의 전형적인 과학' 지식과는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25] 둘째, 기능적 특성으로 생태학적 · 사회경제적 · 문화적 환경에 의해 생성된 실천적인 표준적 지식이고, 인간중심적 · 역동적 · 실험적이며 차세대로 전수되고, 문화적 가치를 지니면서 다양성을 촉진시키고, 지역자원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원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26] 셋째, 형태적 특성으로 정신적 요소와 실용적 요소가 얽힌 복합적 요소를 가지며, 문화적 표현과 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전체적·체계적으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한 비형식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27] kTKRC 재설정 작업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자원 전체를 포용하면서 체계적인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25) WIPO, "Review of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IPO/GRTKF/IC/3/7)",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s://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3/wipo_grtkf_ic_3_7.pdf〉. 검색일 : 2019. 10. 3.

26) WIPO, "Matter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An Overview (WIPO/GRTKF/IC/1/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4295&la=EN〉, 검색일 : 2019. 10. 3.

27) WIPO, "Elements of a *Sui Generis* System for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IPO/GRTKF/IC/3/8),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s://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3/wipo_grtkf_ic_3_8.pdf〉, 검색일 : 2019. 10. 3.

# Ⅲ. 국외 전통지식자원 관련 분류체계 검토

## 1. 국제특허분류(IPC)

IPC는 1975년 10월 WIPO가 공표한 분류방식으로, 특허문헌의 체계적인 분류와 검색, 배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IPC는 특허문헌을 고유의 분류코드로 할당하는데, 특허문헌이 속한 기술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이 분류방식은 인도 TKRC와 2003년에 개발된 kTKRC의 근간이 되었다.

IPC는 섹션부터 서브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까지 6개 레벨의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IPC의 최상위 레벨인 섹션은 A에서 H까지의 8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는 생활필수품, B는 처리조작 · 수송, C는 화학 · 야금, D는 섬유·종이, E는 고정 구조물, F는 기계공학 · 조명 · 가열 · 무기 · 폭파, G는 물리학, H는 전기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2019년 1월 1일자로 적용된 IPC 구조의 일부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28]

〈표 3〉 WIPO 국제특허분류(IPC)의 구조

| Section | 〈Subsection〉 Class | Subclass | Group | Subgroup |
|---|---|---|---|---|
| A<br>Human Necessities<br><br>B 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rting<br><br>C<br>Chemistry; Metallurgy | 〈AGRICULTURE〉<br>A01<br>Agriculture; Forestry; Animal Husbandry; Hunting; Trapping; Fishing<br>〈FOODSTUFFS; TOBACCO〉<br>A21 Baking; Equipment for making or processing Doughs; Doughs for baking<br>A22 Butchering; Meat treatment; Processing poultry or fish | A01B Soil working in agriculture or forestry; Parts, details, or accessories of agricultural machines or implements, In general<br>A01C Planting; Sowing; Fertilising | A01B 1/00<br>Hand tools<br>A01B 3/00<br>Ploughs with fixed plough-shares<br>A01B 5/00<br>Ploughs with rolling non-driven tools, e.g. discs | A01B 1/02<br>Spades; Shovels<br>A01B 1/04<br>with teeth<br>A01B 1/06<br>Hoes; Hand cultivators<br>A01B 1/08<br>with a single blade |

28) WIPO,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s://www.wipo.int/classifications/ipc/en/ITsupport/Version20190101〉, 검색일 : 2019. 6. 20.

| | | | | |
|---|---|---|---|---|
| **D** Textiles; Paper<br>**E** Fixed Constructions<br>**F** Mechanical Engineering<br>**G** Physics<br>**H** Electricity | **A23** Foods or foodstuffs; Their treatment, Not covered by other casses<br>**A24** Tobacco; Cigars; Cigarettes; Smokers' requisites<br>**〈PERSONAL OR DOMESTIC ARTICLES〉**<br>**A41** Wearing apparel<br>**A42** Headwear<br>**A43** Footwear<br>**A44** Haberdashery; Jewellery<br>**A45** Hand or travelling articles<br>**A46** Brushware<br>**A47** Furniture; domestic articles or appliances; Coffee mills; Spice mills; Suction cleaners in general<br>**〈HEALTH; LIFE-SAVING; AMUSEMENT〉**<br>**A61** Medical or Veterinary Science; Hygiene<br>**A62** Life-Saving; Fire-Fighting<br>**A63** Sports; Games; Amusements<br>**A99** Subject matter not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section | **A01D** Harvesting; Mowing<br>**A01F** ……<br>**A01G** ……<br>**A01H** ……<br>**A01J** Manufacture of dairy products<br>**A01K** ……<br>**A01L** Shoeing of animals<br>**A01M** Catching, trapping or scaring of animals<br>**A01N** ……<br>**A01P** Biocidal, pest repellant, pest attractant or plant growth regulatory activity of chemical compounds or preparations | **A01B 7/00** Disc-like soil-working implements usable either as ploughs or as harrows, or the like<br>**A01B 9/00** Ploughs with rotary driven tools<br>**A01B 11/00** Ploughs with oscillating, digging or piercing tools<br>**A01B 13/00** Ploughs or like machines for special purposes<br>……<br>**A01B 79/00** Methods for working soil | **A01B 1/10** with two or more blades<br>**A01B 1/12** with blades provided with teeth<br>**A01B 1/14** with teeth only<br>**A01B 1/16** Tools for uprooting weeds<br>**A01B 1/18** Tong-like tools<br>**A01B 1/20** Combinations of different kinds of hand tools<br>**A01B 1/22**<br>……<br>**A01B 1/24** for treating meadows or lawns |

섹션 A는 4개의 서브섹션(농업, 식료품/담배, 개인 및 가정용품, 건강/인명구조/오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분류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16개로 구분된 클래스에 분류기호를 부여하였다. 클래스 분류기호는 A에 두 자릿수의 숫자를 붙이는 방식인데 농업은 01, 식품/담배는 21 ~ 24, 개인 및 가정용품은 41 ~ 47, 건강/인명구조/오락은 61 ~ 63과 99로 구성되어 있다. A01에 속한 서브클래스는 A01B ~ A01P까지 1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분류기호가 부여되다가 E, I, O는 누락되어 있다. 분류항목의 유형이 구분되어야 할 부분에서 필요에 의해 알파벳을 건너뛴 것으로 판단된다. A01B에 속한 그룹은 A01B 다음에 1/00 ~ 79/00까지 29개의 분류기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53/00, 55/00, 57/00이 누락된 '홀수번호/0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6/00 하나만 짝수이다. A01B 1/00에 속한 서브그룹은 A01B 1/02 ~

A01B 1/24까지 뒤의 두 자릿수의 숫자가 짝수로 된 분류기호 12개가 부여되어 있다. 다른 서브그룹은 뒤의 숫자가 세 자릿수, 네 자릿수까지 확장되기도 한다.

이렇게 구조화된 IPC는 특허문헌을 다 읽어 보지 않더라도 분류기호를 보고 그 특허 기술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나의 특허문헌에 여러 개의 분류기호를 부여하고 있어 어떤 기술이 복합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 특허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이 특정 IPC 분류체계만으로 표현이 가능할 경우 하나의 IPC 분류코드가 부여되지만, 여러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면, 여러 IPC가 부여되기도 한다.[29]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IPC는 〈표 4〉[30]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8개 섹션, 131개 클래스, 645개 서브클래스, 7,483개 메인그룹, 그리고 67,020개 서브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국제특허분류(IPC) 계층별 분류 수(2019년 1월 1일)

| Section | classes | subclasses | main groups | subgroups | Total |
|---|---|---|---|---|---|
| A | 16 | 84 | 1,136 | 8,048 | 9,184 |
| B | 38 | 169 | 1,983 | 15,259 | 17,242 |
| C | 21 | 87 | 1,322 | 13,387 | 14,709 |
| D | 9 | 39 | 350 | 2,726 | 3,076 |
| E | 8 | 31 | 323 | 3,122 | 3,445 |
| F | 18 | 99 | 1,099 | 8,121 | 9,220 |
| G | 15 | 85 | 723 | 7,831 | 8,554 |
| H | 6 | 51 | 547 | 8,526 | 9,073 |
| Total | 131 | 645 | 7,483 | 67,020 | 74,503 |

29) 박찬정 외 2인, “KNN을 이용한 융합기술 특허문서의 자동 IPC 분류”,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3호(2014), 175-185면.

30) WIPO,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s://www.wipo.int/classifications/ipc/en/ITsupport/Version20190101〉, 검색일 : 2019. 6. 20.

## 2. 인도 전통지식전자도서관(TKDL) 분류체계

인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자국의 전통지식이 특허에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대 문헌에 수록된 의학지식을 DB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인도의 TKDL은 미국특허청이 바스마티 라이스(basmati rice)와 심황에 부여한 특허, 유럽특허청이 님 오일(neem oil)에 부여한 특허를 철회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는데, 1999년에는 TKDL 설정에 관한 논문을 WIPO에 제출하였고, 2001년에는 IPC협회에서 TKRC를 발표하였다. TKRC는 IPC를 기반으로 한 분류시스템으로 전통지식의 체계적인 정리, 배포 및 검색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인터넷이나 웹 등 현대의 IT기술과 접목함으로써 전통지식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제고하였다.[31)]

TKRC는 WIPO 전통지식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IPC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아유르베다, 우나니, 시다, 요가에 수록된 전통 의학지식을 약 25,000개의 하위그룹으로 분류하였다. TKRC는 IPC와 같이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그룹, 서브그룹으로 구성된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최상위 레벨인 섹션은 모두 4개(Ayurveda, Unani, Siddha, Yoga)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조는 〈표 5〉와 같다.

〈표 5〉 인도 전통지식자원분류(TKRC)의 구조

| Section | Class | Subclass | Group | Subgroup |
|---|---|---|---|---|
| A<br>Ayurveda<br>B<br>Unani<br>C<br>Siddha | A01 Pharmaceutical Preparations(Kalpana)<br>A02 Personal Hygiene Preparations<br>A03 Dietary (Food/Food stuff or Beverages)<br>A04 Biosides, Fumigatives(Dhupana, Krimighna) | A01A Based on Plants(Audbhida)<br>A01B Based on Animals(Jangama)<br>A01C Based on Minerals(Parthiva)<br>A01D Characterised by Diseases(Roga)<br>A01E Characterised by Actions(Karma) | A01A-1/00 Whole medicinal Audbhida (plants)<br>A01A-2/00 Parts of the Medicinal plants<br>A01A-3/00 Characterised by physical form.<br>A01A-4/00 | A01A-1/10 Abutilon indicum(Linn.) Sweet<br>A01A-1/101 Alhagi maurorum Baker Dexv/ Alhagi pseudalhagi (Biedb.) Desv./Alhagi camelorum<br>A01A-1/1022 Imperate |

31) TKDL,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TKRC)”,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TKDL), 〈http://www.tkdl.res.in/tkdl/langdefault/common/TKRC.asp〉, 검색일 : 2019. 6. 20.

| | | | | |
|---|---|---|---|---|
| D<br>Yoga | | A01F Mode of Administration<br>A01G Miscellaneous TKRC Codes | Characterised by active ingredients extracted from plants<br>A01A-5/00 Characterised by unknown constituents not provided for from 1/00 to 4/00 | cylindrica Beauv./ Imperata arundinacea Cyr.<br>A01A-1/1030 Indigofera tinctoria Linn.<br>……<br>A01A-1/111 Allium sativum<br>…… |

TKRC는 IPC와 달리 분류기호 구성이 아주 단출하다. 알파벳은 누락된 것 없이 순서대로 부여되어 있고, 숫자 역시 홀수와 짝수 구분 없이 순서대로 부여되어 있다. 다만 서브그룹에서는 단위가 10, 100, 1000 단위로 확장되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한다. 섹션 A(Ayurveda)는 4개의 클래스(A01, A02, A03, A04)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래스 A01(Pharmaceutical Preparations)은 7개의 서브클래스(A01A, A01B, A01C…)로 구성되어 있고, 서브클래스 A01A(Based on Plants)는 5개의 그룹(A01A-1/00, A01A-2/00, A01A-3/00…)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브그룹은 A01A-1/10, A01A-1/101, A01A-1/1022, A01A-1/1030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숫자가 10단위에서 1000단위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 분류의 유연성을 도모하였다.

이렇게 분류되어 TKDL에 등록된 인도의 전통 의학지식은 모두 297,183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유르베다 151권 중 75권에서 97,337건, 우나니 33권 중 10권에서 175,150건, 시다 137권 중 50권에서 23,016건, 요가 38권 중 15권에서 1,680건이 등록되었고 나머지 209종의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TKDL은 힌디어를 비롯하여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 등 5개 언어로 번역된 3만5천여 건의 전통처방을 포함하여 모두 14만 건의 전통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인도의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2011년 3월 WIPO는 TKDL을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모델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했으며, TKDL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 사례가 소개되었다. 또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 미국, 독일,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칠

레, 말레이시아, 러시아, 페루의 특허청과 TKDL 접근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특허청에 TKDL를 보급하여 전통지식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국의 전통지식을 도용하는 특허 출원을 방지하고 있다.[32] 이러한 과정은 WIPO에서 권고하는 전통지식 DB 구축을 통한 방어적 보호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자국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보호하려는 인도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

# Ⅳ.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의 재설정

## 1. 전통지식 분류체계 구성 원칙 및 방법

전통지식 분류체계 재설정은 기존의 kTKRC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포용할 수 없었던 전통지식자원이 포함될 수 있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기존의 kTKRC에서 미흡하게 다루었다고 판단된 창조기술 분야를 대폭 확장하여 전통문화표현물과 무형문화유산이 전통지식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류라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 개념 등을 체계화하는 것을 말하며 비슷한 특징을 갖는 개체들을 집단으로 배열 또는 구분하기 위한 체계이다. 분류방법에는 구분기준에 따라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고, 분류의 근거에 따라 자연분류와 인위분류 방식이 있다.[33] 이 연구에서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인위분류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적합성, 실현가능성, 대표성, 일관성, 계층성의 원칙[34]에 따라 수정・보완 작업을 거쳤다.

---

32) TKDL, “About TKDL”,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TKDL), 〈http://www.tkdl.res.in/tkdl/langdefault/common/Abouttkdl.asp?GL=Eng〉, 검색일 : 2019. 6. 20.

33) 장호수, 앞의 글(2005), 78-101면

34) 이동수 외 3인, “지역 문화예술교육자원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문화산업연구』, 제17권 제3호(2017), 75-84면.

첫째, 적합성 확보를 위해 기존 kTKRC 분류기준과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전통지식 분류체계 관련 선행연구와 전통지식 관련 기관에서 구축 · 운영하는 DB[35]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kTKRC를 재설정하였다. 또한 전통지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검증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통지식자원 발굴, DB구축,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kTKRC 분류체계를 재조정하였다. 이는 WIPO에서 각국의 전통지식자원을 조사 · 정리하고 국제적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다지기 위해 TKRC 개발과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함께 확장된 전통지식의 범주를 모두 포함시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대표성 있는 분류체계가 될 수 있도록 유사 분야의 개념과 범주를 분석하여 새로운 kTKRC 구성요소와 세부항목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재설정된 분류체계는 전통지식뿐만 아니라 전통문화표현물, 무형문화유산까지 포용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닐 수 있으며, 국가적 표준 분류체계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일관성은 분류체계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분류원칙 중 하나이다. 일관성 확보를 위해 최초로 kTKRC 개발한 선행연구자의 원칙[36]과 기준에서

---

35)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통지식포탈(www.koreantk.com), 지역정보포탈(www.oneclick.or.kr), 국가농업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온누리(www.onnuri.rda.go.kr), 국가문화유산포탈(www.heritage.go.kr), 민속아카이브(archive.nfm.go.kr), 문화포털(www.culture.go.kr), 국악아카이브(www.archive.gugak.go.kr), 무형유산디지털아카이브(www.iha.go.kr), 무형유산지식백과(www.ichpedia.org), 오아시스전통의학정보포털(www.oasis.kiom.re.kr), 한국식품지식정보시스템(www.tradifood.net), 한식아카이브(www.archive. hansik.org),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www.nature.go.kr), 한반도생물자원포털(www.nibr.go.kr),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www.nifs.go.kr)에 구축되어 있는 전통지식 분류체계와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새롭게 재설정한 kTKRC 분류항목에 적용하였다.

36) 안윤수 외 2인, 앞의 보고서(2006), 490-528면. kTKRC의 기본 방향으로 섹션에서 그룹까지 계층적 구조는 IPC와 같은 형태를 취하더라도 한국 전통지식의 특징이 나타나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 보완하였으며, 기존의 분류항목 모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계층성은 분류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다. 새로운 분류체계에서도 계층성의 원칙에 따라 섹션, 서브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그룹으로 계층화하였고, 최하위 분류단계인 서브그룹은 IPC처럼 전통지식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 분류항목을 미리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서브그룹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과 정의 규정을 추가하여 전통지식 DB 운영기관의 분류 담당자나 조사자가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통지식의 분류체계 구성과 분류항목에 대한 수정 · 보완은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을 혼합한 복합식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하양식 접근법은 도메인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부터 추출하여 세부적인 개념을 추출해 내는 방법이며, 상향식 접근법은 세부적인 개념을 먼저 추출한 뒤 일반적인 개념을 도출하는 방법이다.[37] 이 연구에서는 좀 더 이상적이고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전통지식 관련 선행연구의 개념, 범주, 분류기준 등을 토대로 세부구성요소들로 접근해 가는 하향식 접근법과 생물자원, 수산자원, 식품, 의류, 주거, 민간의료, 민속 등 각 분야의 전통지식 DB 운영기관의 자원들을 모아 상위 항목들을 도출하는 상향식 접근법을 함께 적용하였다.

## 2. 기존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 검토

2003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kTKRC는 WIPO에서 논의되어 온 개념과 범주, 분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IPC 체계와의 유사성과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비특허문헌의 선행기술 검색과 검증에 편리하고 국제적인 정보교환체계에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38] 용어는 전통지식의 본질인 지식체계와 기술을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대표적으로

록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7) 이동수 외 3인, 앞의 글(2017), 75-84면.

38) 안윤수 외 2인, 앞의 보고서(2006).

사용하였다. 기존의 kTKRC의 전체 구조는 〈표 6〉과 같다.

〈표 6〉 2003년에 개발한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

| 섹션 | 서브섹션 | 클래스 | 서브클래스 | 그 룹 |
|---|---|---|---|---|
| 전통지식(A) | 생업기술(A0) | 농업/임업(A01) | 농업/임업의 토작업 기구(A01B) | • 수작업구(A01B 01/) •쟁기(A01B 03/) • 써래(A01B 05/)<br>• 그 외 토작업구(A01B 07/) •농기계 및 기구의 부품 · 부속구 일반/기타(A01B 09/) |
| | | | 육종/육묘/정지/파종/이식(A01C) | •육종/채종/번식(A01C 01/) •파종/식부 전의 작업(A01C 03/)<br>•파종/육묘(A01C 05/) •이식/기타A01C 07/) |
| | | | 시비/관리/재해방제(A01D) | •비료제조(A01D 01/) •시비방법(A01D 03/)<br>•시비장치(A01D 05/) •재배/물관리(A01D 07/)<br>•기상재해(A01D 09/) •병해충방제(A01D 11/)<br>•동물피해방제/기타(A01D 13/) |
| | | | 수확/처리/저장/기타(A01E) | •수작업용구(A01E 01/) •지상물수확기(A01E 03/)<br>•지하물수확기(A01E 05/) •결속기(A01E 07/)<br>•모으기/쌓기/이송(A01E 09/)•수납/저장/기타(A01E 11/) |
| | | 축산/잠업/양봉/어업/수렵(A02) | 개량/번식(A02B) | •선발/교배(A02B 01/) •수정/분만(A02B 03/)<br>•채란/부화/우화/기타(A02B 05/) |
| | | | 사육/사료/관리/이용(A02C) | •가축(A02C 01/) •양잠(A02C 03/) •양봉(A02C 05/)<br>•양어/기타(A02C 07/) |
| | | | 포획/도축/가공/기타(A02D) | •동물 포획/어구(A02D 01/) •축산물/낙농제품의 가공/제조(A02D 03/)<br>•도축/처리/저장/기타(A02D 05/) |
| | 생활기술(A2) | 식생활(A21) | 식품가공(A21B) | •곡류(A21B 01/) •두류(A21B 03/) •과채류(A21B 05/)<br>•수산물(A21B 07/) •축산물/유제품/기타(A21B 09/)<br>•주류/기타(A21B 011/) |
| | | | 조리(A21C) | •주식류(A21C 01/) •부식류(A21C 03/)<br>•떡 · 과정류/기타(A21C 05/) |
| | | | 저장/저장고(A21D) | •건조(A21D 01/) •절임(A21D 03/) •냉장/냉동(A21D 05/)<br>•훈연/움저장/저장고/기타(A21D 07/) |
| | | | 식생활도구/용품/기타(A21E) | •가공/조리 도구(A21E 01/) •저장/운반 도구(A21E 03/)<br>•식생활 용품/기타(A21E 05/) |
| | | 의생활(A22) | 의재료가공/염색(A22B) | •식물재료(A22B 01/) •동물재료(A22B 03/) •직조(A22B 05/)<br>•천연염색(A22B 07/) •혼합재료/기타(A22B 09/) |
| | | | 의복제조(A22C) | •관모류(A22C 01/) •겉옷(A22C 03/) •속옷(A22C 05/)<br>•포/대류(A22C 07/) •신발류/장식류/기타(A22C 09/) |
| | | | 의복관리/보관(A22D) | •빨래(A22D 01/) •바느질/다림/다듬(A22D 03/)<br>•옷차림 예절/기타(A22D 05/) |
| | | | 의생활도구/용품/기타(A22E) | •가공/염색 도구(A22E 01/) •의복제작용구(A22E 03/)<br>•의복 관리용품/기타(A22E 05/) |

| | | | | |
|---|---|---|---|---|
| | | 주생활/환경보전(A23) | 가옥/구조물(A23B) | •기와집(A23B 01/) •초가(A23B 03/) •느와집/기타(A23B 05/)<br>•공간구조물(A23B 07/) |
| | | | 주생활용품(A23C) | •가구(A23C 01/) •장식(A23C 03/) •집기/용품/기타(A23C 05/) |
| | | | 주거환경/기타(A23D) | •등화/난방(A23D 01/) •취사(A23D 03/)<br>•휴식환경/가신신앙/기타(A23D 05/) |
| | | | 환경·생태보전/기타(A23E) | •환경보전(A23E 01/) •생태보전/기타(A23E 03/) |
| | | 전통의료(A24) | 진단/진맥/처치(A24B) | •사람(A24B 01/) •가축/기타(A24B 03/) |
| | | | 의료기구(A24C) | •수술/치과용기구(A24C 01/) •수의용기구(A24C 03/)<br>•환자의 수송/장의용구/기타(A24C 05/) |
| | | | 의약용천연물제제(A24K) | •유기활성 성분(A24K 31/) •무기활성 성분(A24K 33/)<br>•구조를 알 수 없는 물질(A24K 35/)<br>•식물조제약/기타(A24K 36/) |
| | | | 의약용화합물제제/기타(A24P) | •소화기계 질환(A24P 01/) •대사/내분비계 질환(A24P 05/)<br>•심혈관계 질환(A24P 09/) •피부비뇨기계 질환(A24P 13/)<br>•골 근육계 질환 (A24P 19/)<br>•마취제/구충제/면역제/기타(A24P 23/) |
| | 창조적기술(A4) | 문화적창조기술(A41) | 유형창조물(A41B) | •건축/조각(A41B 01/) •교통통신(A41B 03/)<br>•과학기술(A41B 05/) •종교 신앙/기타(A41B 07/) |
| | | | 전승표현물(A41C) | •음악/노래(A41C 01/) •춤(A41C 03/) •전래풍속(A41C 05/)<br>•민담/설화(A41C 07/) •예능 · 오락/기타(A41B 09/ |
| | | | 체계화된 지식/언어적 표시/기타(A41D) | •수련/건강 지식(A41D 01/) •오락/운세 지식(A41D 03/)<br>•명칭/지리적 표시/기타(A41D 05/) |
| | | 제도적창조기술(A42) | 공동체제도/활동(A42B) | •사회/기념(A42B 01/) •민간신앙/축원(A42B 03/)<br>•단결/소득/기타(A42B 05/) |
| | | | 관혼상제/가족제도/기타(A42C) | •관혼상제(A42C 01/) •가족제도/기타(A42C 03/) |

기존 kTKRC의 기본적 구조는 IPC나 인도 TKRC와 같이 섹션에서부터 서브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그룹, 서브그룹까지 6단계의 계층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TKRC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IPC 섹션 중 전통지식자원과 가장 유사한 항목들이 속해 있는 생필품 섹션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전통지식자원 전체를 IPC의 생필품 섹션과 대등하게 코드 A를 부여하였다.

서브섹션 구분은 먼저 농업, 임업, 축산 등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1차 산물을 생산하는 항목들을 '생업기술'로 엮고, 1차적인 산물이나 자연을 변형

하여 생활에 이용하는 의식주 생활과 전통의료를 포함하는 '생활기술'을 또 하나로 엮고, 전통적인 사회와 문화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자원들을 포함하기 위해 문화와 제도를 포함하는 '창조기술'을 또 하나로 엮어 모두 3개 항의 서브섹션을 설정하였다.

kTKRC의 전체적 구조는 전통지식을 섹션으로 하고 3개의 서브섹션과 8개의 클래스, 28개의 서브클래스와 10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최하의 분류단계인 서브그룹은 IPC와 마찬가지로 전통지식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류 항목을 미리 설정하지 않고 향후에 수집 · 발굴 · 조사될 자원의 그룹을 포괄하는 명칭을 서브그룹으로 추가하도록 하였다.[39)]

kTKRC가 개발되어 이용된 지 10년이 지난 2013년에는 일부 개선작업이 이루어졌다. 전통지식 DB의 종류와 자료량의 증가로 인해 기존 kTKRC로는 분류할 수 없는 자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모든 전통지식 DB를 포괄하면서 DB 교환과 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지식자원 분류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 작업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주도하였는데, IPC 기준과 한국 전통지식자원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kTKRC를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섹션부터 서브클래스는 그대로 두고 그룹만 수정 · 보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생업기술에서는 농업/임업(A01)과 축산/잠업/양봉/어업/수렵(A02) 클래스의 그룹 항목을 일부 추가하였고, 생활기술에서는 식생활(A21)과 전통의료(A24) 클래스의 그룹 항목을 크게 개선하였다. 특히 전통의료(A24) 클래스는 그룹 전체의 구조와 내용을 새롭게 개선하였다.[40)] 전체적으로 그룹이 27개 증가하여 서브섹션 3, 클래스 8, 서브클래스 28, 그룹 132개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2013년에 개선된 kTKRC는 특허청의 한국전통지식포탈 DB 분류에 적용되고 있으며,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전통지식조사사업,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국 민간요법 발굴조사사업에서 이용되었다.

---

39) 강방훈 외 5인(편), 앞의 책, 2010.

40)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 전통지식 분류체계 조사 · 연구보고서", 한국특허정보원, 2013.

## 3.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 재설정

kTKRC 재설정 작업에 앞서 전문가협의회[41]를 통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협의회를 통해 이미 국내에서 전통지식분류체계로 활용되고 있는 kTKRC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생물자원을 포함하여 유전물질, 유전자원, 파생물 등과 관련된 폭넓은 범위의 전통지식자원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국내 전통지식 DB구축 및 운영기관의 분류체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수집되는 전통지식자원의 분류 가능성과 타당성을 논의하면서 제안된 것이 '기타' 항목의 설정이었다.[42] 국제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보다 포괄적인 의미와 범주가 필요하며 분류되지 않는 전통지식자원들에 대한 분류 방법으로써 기타 항목이 유용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서브클래스 가장 마지막 항목에 '기타'를 추가하여 서브클래스 내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전통지식자원을 모아 놓은 후 그룹이 형성되면 추후에 분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두었다. 다시 말하면, 서브클래스에 기타 항목을 설정하여 DB구축 과정에서 분류되지 못하는 전통지식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기타 항목의 설정과 함께 서브클래스 분류체계의 혁신적 구조에 있다. 서브클래스는 분류기호 맨 뒷자리가 알파벳 B부터 시작되는데 B는 '시설/도구/제도 등 인프라 관련 기술', C부터 O까지는 가장 구성항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배/생산 관련 기술', P부터 Y까지는 운반, 저장, 가공, 유통 등과 같은 '서비스/활용 관련 기술'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Z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항목에 부여한 코드이다. 물론 알파벳이 모두 활용될 정도로 많은 분류기호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미래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미리 간격을 벌려 둔 것이다. 생업기술(A0) 서브섹션을 예로 들면, 농업(A01) 클래스의

41) 이 협의회는 2018년 11월에 2회 이루어졌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kTKRC 재설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주었다.

42) IPC에서도 적절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분류가 생길 때까지 기타로 분류한다.

농업시설/기구(A01B)는 농업 분야의 '시설/도구/제도 등 인프라 관련 기술'이 해당되는 항목들을 모아 놓은 것이고, 그 다음의 개간/간척/관개/경운(A01C), 작물육종/육묘/파종/정식(A01D), 재배/관리/수확(A01E)은 '재배/생산 관련 기술'이 해당되는 항목들을 모아 놓은 것이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운반/저장/유통(A01P)은 '서비스/활용 관련 기술'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번 kTKRC 재설정은 분류의 편리성에도 역점을 두었다. 기존의 kTKRC처럼 서브그룹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선행연구와 전통지식 관련 DB의 구성요소들을 추출하여 서브그룹에 포함될 수 있는 구성항목과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는 DB 운영기관의 분류 담당자나 전통지식자원을 발굴 · 수집하는 조사자가 그 그룹에 속하는 자원의 유형과 종류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향후 서브그룹 구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와 같은 kTKRC 재설정 작업은 분류체계 설정과 검토의 과정을 세 차례 반복하면서 세부항목까지 꼼꼼하게 수정 ·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는 기존 kTKRC 개발자를 포함하여 13개 기관[43]에서 연인원 3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kTKRC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 (1) 생업기술 서브섹션 분류체계와 구성항목

생업기술(A0) 세브섹션의 가장 큰 변화는 클래스의 확장이다. 농업/임업(A01)과 축산/잠업/양봉/어업/수렵(A02)으로만 양분되었던 클래스를 생업 분야 각각의 특성과 관련 법률[44]의 유무를 고려하여 농업, 임업, 축산/양봉, 양잠, 어업/염업, 수렵, 광업으로 세분하였다.[45] 특히 염업과 광업은 기존 분

43) 이 과정에 참여한 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을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무형유산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목포대학교도서문화연구원, 안동대학교, ㈜액츠원 등이다.

44) 이와 관련하여 검토한 법률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축산법」,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광업법」 등이다.

45) 이와 관련해서는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http://archive.nfm.go.kr〉를 참고하였다.

류체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서브클래스는 대체로 육종-파종(번식)-재배(사육)-관리-수확(도축)-저장-유통으로 이어지는 생업기술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구성요소들 중 대표적인 항목으로 그룹을 설정하였다. 다만, 농업, 축산, 어업에서의 가공은 생활기술(A2) 서브섹션의 식생활(A22)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7〉 생업기술 서브섹션 분류체계와 구성항목

| Section 전통지식(A) / Subsection 생업기술(A0) | | | |
|---|---|---|---|
| Class | Subclass | Group | 구성항목 및 정의 |
| 농업(A01) | 농업시설/기구(A01B) | 농업시설(A01B 01/) | •농경지, 관개시설, 저장시설, 건조장, 방앗간 등 농업시설의 축조/관리/이용 |
| | | 농기구(A01B 03/) | •토작업, 재배, 관리, 수확, 운반, 가공 등을 위한 농기구의 제작/관리/이용 |
| | | 축력(A01B 05/) | •소, 말 등의 축력 길들이기/관리/이용 |
| | 개간/간척/관개/경운(A01C) | 농지개간/간척(A01C 11/) | •개답, 개전, 화전 등의 개간과 해면간척, 호면간척, 하천간척 등의 방법과 기술 |
| | | 수리관개(A01C 13/) | •관개, 배수 등 수리관개 관련 지식체계 |
| | | 경운/정지(A01E 15/) | •묘상, 심토, 심경, 파쇄, 파기, 정지, 써레질, 북주기, 객토 등의 방법과 기술 |
| | 작물육종/육묘/파종/정식(A01D) | 육종/채종(A01D 21/) | •분리, 교잡, 돌연변이, 번식, 선발, 채종, 보존 등의 방법과 기술 |
| | | 육묘/파종(A01D 23/) | •묘상, 묘포, 씨앗묘, 뿌리묘, 줄기묘, 꺾꽂이, 접붙이기, 파종 등의 방법과 기술 |
| | | 이식/정식(A01D 25/) | •농작물의 이앙, 가식, 정식 등의 방법과 기술 |
| | 재배/관리/수확(A01E) | 재배(A01E 31/) | •작물재배, 비료제조, 시비 등의 방법과 기술 |
| | | 관리/방제(A01E 33/) | •비배, 물관리, 기상재해, 병해충, 동물피해, 잡초, 생리장해 등 관리 및 방제기술 |
| | | 수확/처리(A01E 35/) | •베기, 따기, 꺾기, 훑기, 캐기, 결속, 탈곡, 건조, 결속 등의 방법과 기술 |
| | 운반/저장/유통(A01P) | 운반/저장/비축(A01E 91/) | •이동, 운반, 저장, 비축 등의 방법과 기술 |
| | | 유통(A01E 93/) | •농산물의 교환, 판매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기타(A01Z) |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 관련 지식 및 기술 | |
| 임업(A02) | 임업시설/기구(A02B) | 임업시설(A02B 01/) | •목재소, 종묘장 등 임업시설의 축조(건축)/관리/이용 |
| | | 임업기구(A02B 03/) | •산림토목, 육종, 육림, 벌채, 채취, 운송 등을 위한 임업기구의 제작/관리/이용 |
| | 임목육종/육묘(A02C) | 육종/채종(A02C 21/) | •선발, 교잡, 변이, 도입, 채종, 보존 등의 방법과 기술 |
| | | 육묘/파종(A02C 23/) | •묘상, 묘포, 씨앗묘, 뿌리묘, 줄기묘, 꺾꽂이, 접붙이기, 파종 등의 방법과 기술 |

| | | | |
|---|---|---|---|
| | 조림/관리/방제/수확/벌채(A02D) | 식재/조림(A02D 31/) | •식수, 삽목, 파종, 천연하종, 맹아갱신 등의 방법과 기술 |
| | | 관리/방제(A02D 33/) | •거름주기, 치수, 밑깎기, 가지치기, 덩굴피기, 병충해방제 등의 방법과 기술 |
| | | 채취/수확(A02E 35/) | •산나물, 산약초, 열매 등의 채취와 관련된 지식체계 |
| | | 벌채(A02E 37/) | •벌목(개벌, 점벌, 택벌, 간벌, 제벌), 벌근 등의 방법과 기술 |
| | 운반/저장/가공(A02P) | 운반/저장/비축(A02F 91/) | •조재, 집재, 적재, 운재, 저목 등의 방법과 기술 |
| | | 가공/유통(A02F 93/) | •목재, 화목, 산채, 산약초 등 임산물의 가공, 교환, 판매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기타(A02Z) |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임업 관련 지식 및 기술 | |
| 축산/양봉(A03) | 축산시설/기구/사육지(A03B) | 축산시설(A03B 01/) | •우사, 돈사, 계사, 도축장, 집유장 등 축산시설의 축조(건축)/관리/이용 |
| | | 축산기구(A03B 03/) | •육종, 사양, 도축, 착유, 양봉, 운반 등을 위한 축산기구의 제작/관리/이용 |
| | | 사육지/봉장(A03B 05/) | •방목지, 봉장 등 사육지의 선정, 조성, 관리, 이용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육종/개량/번식(A03C) | 육종/개량(A03C 21/) | •육종을 위한 가축의 선발, 교배, 개량 등의 방법과 기술 |
| | | 번식/분봉(A03C 23/) | •가축의 번식, 증식, 분봉 등의 방법과 기술 |
| | 사양/관리/도축/수확(A03D) | 가축사양/사료(A03D 31/) | •급사, 급수, 제각, 단모 등의 가축사양 및 사료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
| | | 양봉/곤충사육(A03D 33/) | •양봉 및 곤충사육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
| | | 가축관리/방역(A03D 35/) | •품질관리, 위생, 방역, 소독, 구충 등의 방법과 기술 |
| | | 도축/착유/채란(A03D 37/) | •도축, 채란, 착유 등의 방법과 기술 |
| | | 채밀/수확(A03E 39/) | •채밀 및 곤충수확의 방법과 기술 |
| | 운반/저장/유통(A03P) | 운반/저장/비축(A03P 91/) | •축산물의 운반, 처리, 저장, 비축 등의 방법과 기술 |
| | | 유통(A03P 93/) | •축산물의 교환, 판매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기타(A03Z) |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축산/양봉 관련 지식 및 기술 | |
| 양잠(A04) | 양잠시설/기구(A04B) | 양잠시설(A04B 01/) | •잠사 등 양잠시설의 축조(건축)/관리/이용 |
| | | 양잠기구(A04B 03/) | •누에채반, 누에섶, 물레, 베틀 등 양잠기구의 제작/관리/이용 |
| | 누에육종/번식(A04C) | 누에육종(A04C 21/) | •육종을 위한 누에의 선발, 교잡, 변이, 번식 등의 방법과 기술 |
| | | 누에번식(A04C 23/) | •누에의 번식, 증식 등의 방법과 기술 |
| | 사육/방역/수확(A04D) | 누에치기(A04C 31/) | •먹이주기, 누에올리기, 누에털기, 섶올리기 등의 방법과 기술 |
| | | 뽕잎생산(A04D 33/) | •뽕나무 육종, 번식, 재배, 뽕밭관리, 뽕잎채취 등의 방법과 기술 |
| | | 위생/방역(A04C 35/) | •위생, 방역, 소독 등의 방법과 기술 |

| | | | |
|---|---|---|---|
| | | 누에수확/처리 (A04D 37/) | •누에수확, 처리 등의 방법과 기술 |
| | | 고치수확/처리 (A04D 39/) | •누에고치털기, 처리 등의 방법과 기술 |
| | 운반/저장/유통(A04P) | 운반/저장/비축 (A04P 91/) | •누에 및 누에고치의 운반, 처리, 저장, 비축 등의 방법과 기술 |
| | | 유통(A04P 93/) | •누에 및 누에고치의 가공, 교환, 판매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기타(A04Z) |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양잠 관련 지식 및 기술 | |
| 어업/염업(A05) | 어업시설/어선/어구/어장(A05B) | 어업시설(A05B 01/) | •산란장, 양식장, 어초 등 어업시설의 축조(건축)/관리/이용 |
| | | 어선/어구(A05B 03/) | •어선의 건조/관리/이용 및 어구의 제작/관리/이용 |
| | | 어장/서식지/양식장 (A05B 05/) | •어장, 서식지, 양식장, 낚시터 등의 선정, 관리, 이용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채취/나잠어업(A05C) | 채취/맨손어업 (A05C 21/) | •조류, 패류, 어류, 갯지렁이, 쏙 등 채취/맨손어업의 방법과 기술 |
| | | 나잠/잠수기어업 (A05C 23/) | •홍합, 소라, 고동, 전복, 해삼, 성게, 어류 등 나잠/잠수기어업의 방법과 기술 |
| | 양식어업 (A05D) | 육종/개량/번식 (A05D 31/) | •교배, 잡종, 채묘, 종묘생산, 유어생산 등의 방법과 기술 |
| | | 양식/사료(A05D 33/) | •어류, 패류, 조류 등의 양식 및 사료제조 기술 |
| | | 품질관리/방역 (A05D 35/) | •양식 어류 등의 품질관리, 위생, 방역, 소독 등의 방법과 기술 |
| | 어선어업 (A05E) | 연안어업(A05E 41/) | •자망, 안강망, 저인망, 선망, 통발, 들망, 조망, 선인망 등의 방법과 기술 |
| | | 근해어업(A05E 43/) | •선망, 채낚기, 자망, 안강망, 봉수망, 통발, 연승, 형망 등의 방법과 기술 |
| | | 원양어업(A05E 45/) | •포경, 안강망, 유자망, 자망 등의 방법과 기술 |
| | 정치어업/낚기(A05F) | 정치어업(A05F 51/) | •방렴, 석방렴, 죽방렴, 토방렴, 주목망(낭망, 대망, 덤장) 등의 방법과 기술 |
| | | 낚기어업(A05F 53/) | •외줄낚기(대낚기, 손줄낚기, 끌낚기), 주낙(뜬주낙, 땅주낙, 선주낙) 등의 방법과 기술 |
| | 염업(A05G) | 염전(A05G 01/) | •염전의 선정, 시설, 관리, 이용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염업기구(A05G 03/) | •채염, 제염을 위한 기계와 도구의 제작/관리/이용 |
| | | 채염(A05G 61/) | •시기, 방법, 기술 등 채염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제염(A05G 62/) | •시기, 방법, 기술 등 제염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운반/저장/유통(A05P) | 운반/저장/비축(A05P 91/) | •어업/염업을 통해 획득한 수산물의 운반, 저장, 비축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유통(A05P 93/) | •어업/염업을 통해 획득한 수산물의 교환, 판매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기타(A05Z) |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어업/염업 관련 지식 및 기술 | |
| 수렵(A06) | 수렵장/도구(A06B) | 수렵장(A06B 01/) | •수렵장의 선정, 관리, 이용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수렵기구(A06B 03/) | •총포, 활, 창, 매, 사냥개, 덫, 그물, 올가미 등의 제작/관리/이용 |
| | 수렵/도축(A06C) | 수렵기술(A06C 31/) | •매사냥, 그물사냥, 함정사냥, 섶사냥, 창사냥, 활사냥, 총사냥 등의 방법과 기술 |

| | | | |
|---|---|---|---|
| | | 도축/처리(A06C 33/) | •포획한 새와 짐승의 도축, 처리 등의 방법과 기술 |
| | 운반/저장/유통(A06P) | 운반/저장(A06P 91/) | •포획한 새와 짐승의 운반, 저장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유통(A06P 93/) | •포획한 새와 짐승의 가공, 유통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기타(A06Z) |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수렵 관련 지식 및 기술 | |
| 광업(A07) | 광업시설/기구/광산(A07B) | 광업시설(A07B 01/) | •막장, 선광소, 제련소 등 광업시설의 축조(건축)/관리/이용 |
| | | 광업기구(A07B 03/) | •착암기, 굴착기, 드릴, 광차, 권양기, 컨베이어 등 광업기구의 제작/관리/이용 |
| | | 광산(A07B 05/) | •광산의 탐사, 선정, 관리, 이용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채굴(A07C) | 채굴(A07C 31/) | •굴착, 천공, 화약, 발파, 지보, 지압 등 채굴 방법과 기술 |
| | 운반/저장/가공(A07P) | 운반/저장/비축(A06P 91/) | •막장운반, 수평갱도운반, 수갱/사갱운반 등의 방법과 기술 |
| | | 제련/가공/유통(A06P 93/) | •선광, 제련, 가공 등의 방법과 기술 및 교환, 판매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기타(A07Z) |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광업 관련 지식 및 기술 | |

그룹의 분류기호는 IPC와 동일하게 두자릿수의 홀수로 배정했으며, 01 ~ 09까지는 인프라 관련 기술, 11 ~ 89까지는 재배/생산 관련 기술, 91 ~ 99까지는 서비스/활용 관련 기술에 해당되는 항목의 코드로 부여하였다. 이러한 분류기호 배정은 생활기술과 창조기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재설정된 생업기술 서브섹션은 모두 7개의 클래스, 37개의 서브클래스, 78개 그룹으로 확장되었다.

### (2) 생활기술 서브섹션 분류체계와 구성항목

생활기술(A2) 서브섹션의 클래스 변화는 크지 않지만, 하위 레벨에서의 확장성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서브클래스의 의생활(A21), 식생활(A22), 주생활(A23)의 경우는 관련 DB구축 및 운영기관의 분류체계를 참조하여 그룹 항목을 전체적으로 변경·확장하였다. 특히 식생활은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46]과 한국식품연구원의 한국식품지식정보시스템[47]을 참고하여 구성항목들을 설정하였다. 전통의료(A23)는 같은 위계의 항목과 구

46) 농촌진흥청,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http://koreanfood.rda.go.kr〉, 검색일 : 2019. 6. 20.

47)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지식정보시스템 전통식품분류 검색”, 〈https://www.tradifood.net/user/food/searchFoodClass.do〉, 검색일 : 2019. 6. 20.

조를 맞추기 위해 여러 차례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한의학연구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좀 더 덧붙이면, 식생활의 식품가공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전통지식 분류체계에 있으나 누락되어 있었던 산채류를 그룹에 포함시켰다. 의생활의 관모류, 신발류, 장식류 등으로 되어 있던 의복제조를 일상복, 의례복, 특수복, 장신구, 신발류로 변경하여 기능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주생활에서 가옥/구조물과 건조/축조 관련 기술을 따로 분리하여 유형적 특성과 무형적 특성을 함께 강화하였다. 전통의료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의료시설과 제도를 추가하였고 보건/미용 분야도 서브클래스에 포함하여 분류되지 않는 항목이 없도록 하였으며 확장성을 도모하였다.

**〈표 8〉 생활기술 서브섹션 분류체계와 구성항목**

| Section 전통지식(A) / Subsection 생활기술(A2) | | | |
|---|---|---|---|
| Class | Subclass | Group | 구성항목 및 정의 |
| 의생활(A21) | 의생활시설/기기(A21B) | 의생활시설(A11B 01/) | •침선가, 포목전, 신발전, 양복점, 양잠점, 세탁소 등 의생활시설의 기능과 이용 |
| | | 의생활기구(A11B 03/) | •재료가공도구(직조, 피혁 등의 가공도구), 의복제작용구(바늘, 실, 자, 가위, 인두, 골무 등), 의복관리용품(다듬잇돌, 다리미, 반닫이장 등) 제작/관리/이용 |
| | 재료가공/염색(A21C) | 직조(A11C 11/) | •모시짜기, 삼베짜기, 명주짜기, 무명길쌈 등의 직조기술 |
| | | 피복재료가공(A11C 13/) | •직조를 제외한 식물성 및 동물성 피복재료 가공기술 |
| | | 염색(A11C 15/) | •납염, 판체염, 교염, 날염, 유염, 무염, 묘염, 호방염, 전사염 등의 염색기술 |
| | 의복제조(A21D) | 일상복제작(A11D 21/) | •배내옷, 바지, 치마, 저고리, 버선, 도포, 장삼, 고쟁이 등 일상복 제작기술 |
| | | 의례복제작(A21D 23/) | •돌띠, 활옷, 폐슬, 제복, 조복, 중단, 관모, 장복, 강사포 등 의례복 제작기술 |
| | | 특수복제작(A21D 25/) | •갑옷, 첩리, 폐낭, 전립, 상모, 배자, 전대, 가사, 승혜 등 특수복 제작기술 |
| | | 장신구제작(A21D 27) | •복건, 댕기, 초립, 족두리, 면포, 비녀, 갓, 망건, 감투, 패랭이, 벙거지, 노리개, 반지, 목걸이, 팔찌, 주머니, 단추, 방울 등의 장신구 제작기술 |
| | | 신발류제작(A21D 29/) | •가죽신, 짚신, 나막신, 고무신, 구두, 운동화 등의 제화기술 |
| | 의복관리(A21E) | 세탁/건조/보관(A21E 31/) | •세탁, 건조, 표백, 얼룩빼기, 보관 등과 관련된 기술 |
| | | 수선/다림/다듬(A21E 33/) | •의복 수선, 다림질, 다듬이질 등과 관련된 기술 |

| | | | |
|---|---|---|---|
| | | 옷차림예절(A21E 35/) | •연령, 계절, 관직 등에 따른 옷차림 예절 |
| | 운송/집적/유통(A21P) | 운송/집적(A21P 91/) | •피복재료 및 의류의 운송, 집적 등의 지식체계 |
| | | 판매/유통(A21P 93/) | •피복재료 및 의류의 판매, 유통 등의 지식체계 |
| | 기타(A21Z) |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의생활 관련 지식 및 기술 | |
| 식생활(A22) | 식생활시설/기구/용품(A22B) | 식생활시설(A22B 01/) | •부엌, 식당 등 식생활 시설의 축조(건조)/관리/이용 |
| | | 식품가공기구(A12B 03/) | •맷돌, 절구, 방아, 확 등 식재료 가공도구의 제작/관리/이용 |
| | | 조리기구(A22B 05/) | •솥, 냄비, 신선로, 칼, 도마, 주걱, 국자, 석쇠, 석판, 떡판, 떡메, 밀판, 홍두깨, 국수틀, 떡살, 다식판, 약과판, 과자틀 등 조리도구의 제작/관리/이용 |
| | | 저장/운반기구(A22B 07/) | •찬장, 뒤주, 독, 항아리, 단지, 쌀통 등 저장도구 및 함지, 모랭이, 광주리, 병, 바가지, 주전자, 목판, 쟁반, 바구니 등 운반도구의 제작/관리/이용 |
| | | 식생활용구(A22B 09/) | •상, 그릇, 숟가락, 젓가락, 탕기, 대접, 보시기, 종지, 뚝배기 등 식생활용품의 제작/관리/이용 |
| | 식품가공(A22C) | 곡류가공(A22C 11/) | •쌀, 밀, 보리, 옥수수 등 곡류 가공기술 |
| | | 두류가공(A22C 13/) | •콩, 팥, 녹두, 강낭콩, 완두, 동부, 땅콩 등 두류 가공기술 |
| | | 과채류가공(A22C 15/) | •오이, 참외, 호박, 토마토, 가지, 고추, 풋콩 등 과채류 가공기술 |
| | | 버섯류가공(A22C 17/) | •송이버섯, 싸리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목이버섯 등 버섯류 가공기술 |
| | | 산채류가공(A22C 19/) | •냉이, 달래, 쑥, 질경이, 민들레, 머위, 취, 고사리, 고비, 두릅, 잔대, 삽주, 얼레지, 참나물, 더덕, 도라지, 산마늘 등 산채류 가공기술 |
| | | 수산물가공(A22C 21/) | •어류, 해조류, 패류 등 수산물 가공기술 |
| | | 축산가공(A22C 23/) | •고기, 우유, 염소유, 양유,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꿀, 누에 등의 가공기술 |
| | 조리(A22D) | 주식류(A22D 31/) | •밥, 죽, 면, 만두, 떡국 등 주식류 조리기술 |
| | | 부식류(A22D 33/) | •국/탕, 찌개/전골, 찜/선/조림, 김치, 나물/생채, 전/구이, 회, 순대/편육/족편/수란, 마른찬, 젓갈, 장아찌 등 부식류 조리기술 |
| | | 조미식류(A22D 35/) | •장, 양념, 식초 등 조미식류 제조기술 |
| | | 기호식류(A22D 37/) | •떡, 한과/엿, 음청, 술 등 기호식류 제조기술 |
| | | 의례식(A22D 39/) | •관혼상제음식, 세시음식, 굿음식 등 의례식 조리기술 |
| | 건조/보관/처리(A22E) | 건조/보관/저장(A22E 41/) | •식재료 및 식품의 건조, 실온저장, 냉장/냉동과 관련된 기술 |
| | | 절임/발효/훈연(A22E 42/) | •식재료 및 식품의 절임(소금, 간장, 된장, 식초), 발효(알콜, 글리세롤, 젖산, 메탄), 훈연(냉훈, 온훈, 열훈, 액훈) 기술 |
| | | 처리/살균/살충(A22E 43/) | •식재료 및 식품의 약품처리/살균/살충과 관련된 기술 |
| | 운송/집적/유통(A22P) | 운송/집적(A22P 91/) | •식재료 및 식품의 운송, 집적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판매/유통(A22P 93/) | •식재료 및 식품의 판매, 유통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 |
|---|---|---|---|
| | 기타(A22Z) |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식생활 관련 지식 및 기술 | |
| 주 생활 (A23) | 가옥/구조물/기구(A23B) | 가옥/구조물 (A23B 01/) |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화장실, 외양간, 담장, 울타리, 대문, 사립문, 정원, 담장, 울타리, 대문, 사립문 등 가옥과 구조물의 보전/관리/이용 |
| | | 건축기계/도구 (A23B 03/) | •가옥, 구조물 등의 건조와 축조를 위한 기계, 장비, 도구의 제작/관리/이용 |
| | | 주생활용품 (A23C 05/) | •가구, 장식, 등화, 난방, 취사, 집기 등 주생활용품의 제작/관리/이용 |
| | 건조/축조 (A23C) | 가옥설계/건축 (A23C 11/) | •가옥 설계 및 대목, 소목, 편수, 와공, 이장, 미장 등 건조기술 |
| | | 구조물설계/축조 (A23C 13/) | •담장, 울타리, 대문, 사립문 등 가옥 관련 구조물 설계 및 건조기술 |
| | | 조경설계/시공 (A23C 15/) | •조경설계 및 시공 관련 기술 |
| | 주거경관 (A23E) | 주거경관(A23E 21/) | •자연경관, 문화경관, 복합경관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양택풍수/비보 (A23E 23/) | •가옥의 입지, 좌향, 수구막이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휴식/풍치(A23E 25/) | •누정, 모정, 원림, 정자나무 등의 조성(축조, 건축)/관리/이용 |
| | 운송/집적/유통(A23P) | 운송/집적(A23P 91/) | •주생활용품의 운송, 집적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판매/유통(A23P 93/) | •주생활용품의 판매, 유통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기타(A23Z) |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주생활 관련 지식 및 기술 | |
| 전통 의료 (A24) | 의료시설/기구(A24B) | 의료시설(A24B 01/) | •의원, 약방, 산실 등 치료시설 및 제탕소, 제환소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의료기기(A24B 03/) | •침구, 사혈기, 부항기, 뜸기, 훈증기, 찜질기, 소독기, 진단기, 물리치료기, 입욕기구 등 의료기기 및 기구의 제작/관리/사용 방법 |
| | | 채약/제약도구 (A24B 05/) | •약삽, 약호미, 약초통, 약망태기 등 채약도구 및 약연기, 약탕기, 약성주기, 제약기, 약장기, 약보자기, 약저울 등 제약도구의 제작/관리/사용 방법 |
| | | 의료제도(A24B 09/) | •의료관서, 직제, 고시, 교육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의약품 생산 (A24C) | 채약/약재관리 (A24C 11/) | •채약지식과 약재건조, 가공기술 등 제조/제형을 위한 전처리 및 보관 기술 |
| | | 제조/제형/관리 (A24C 13/) | •탕제, 환제, 산제, 고제, 주제, 차제, 욕제, 훈제, 즙액제 등 복용을 위한 약물 제조방법과 제형변환기술 |
| | 진단/치료 (A24D) | 진단기술(A24D 21/) |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을 이용한 진단 기술 |
| | | 약물요법(A24D 23/) | •식물, 동물, 광물 등 천연물을 이용한 약물요법 |
| | | 비약물요법 (A24D 25/) | •침/바늘/부항/사혈, 뜸/훈증/찜질, 마사지, 수기법 등 물리적 자극을 통한 치료 방법과 기술 |
| | | 기공/주술요법 (A24D 27/) | •식이요법, 운동/명상/이완, 자연요법 주문, 부적, 객귀물림, 잔밥먹이기, 치병굿 등 약물, 비약물 요법을 제외한 기타의 치료방법과 지식체계 |
| | 보건/미용 (A24E) | 보건/위생/양생 (A24D 31/) | •보약/양생/보신이나 기타 보건, 위생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미용/화장품 (A24D 33/) | •천연화장품, 한방화장품, 유사화장품, 샴푸, 비누 등의 제조방법과 이용지식 |

| | | | |
|---|---|---|---|
| | 운반/저장/유통(A24P) | 운송/저장/비축 (A24P 91/) | •의약품 및 의료기구의 운송, 저장, 비축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판매/유통(A24P 93/) | •약전, 약령시 등 의약품의 판매, 유통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기타(A24Z) |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전통의료 관련 지식 및 기술 | |

### (3) 창조기술 서브섹션 분류체계와 구성항목

창조기술(A4) 서브섹션은 '창조적 기술'에서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의 '문화적 창조기술'과 '제도적 창조기술' 클래스를 사회/문화(A41) 클래스로 통합하고 하위 레벨들을 크게 확장하였다. 기존 kTKRC에서 그룹이었던 의례, 종교, 공연, 공예, 미술 등이 서브클래스로 격상되었으며, 교육/육아가 추가되어 사회제도 관련 영역이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과학/군사(A42) 클래스를 신설하여 기존 kTKRC에서 문화적 창조기술의 유형창조물에 속해 있던 건축, 교통통신, 과학기술을 포함시키고, 군사기술을 추가하였다. 창조기술 서브섹션의 분류항목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탈,[48]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민속대백과사전[49]을 참고하여 구성항목들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재설정된 창조기술 서브섹션은 전통문화표현물과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과학과 군사 분야의 기술이 포함될 수 있도록 〈표 9〉와 같이 모두 2개의 클래스, 12개의 서브클래스, 32개 그룹으로 확장되었다.

**〈표 9〉 창조기술 서브섹션 분류체계와 구성항목**

| Section 전통지식(A) / Subsection 창조기술(A4) | | | |
|---|---|---|---|
| Class | Subclass | Group | 구성항목 및 정의 |
| 사회/문화 (A41) | 사회제도 (A41B) | 사회규범/조직 (A41B 01/) | •법, 제도, 향약, 두레, 계, 마을조직, 생업조직, 친목회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가족제도(A41B 03/) | •가족, 친족, 혼인, 상속, 부양 등과 관련된 제도적 지식체계 |
| | | 교육/육아(A41B 05/) | •교육, 육아 등과 관련된 제도적 지식체계 |
| | 의례/풍속/ | 일생의례(A41C 11/) | •임신, 출산, 백일, 돌, 성년례, 결혼, 회갑, 고희, 상례, 제례 등 |

48) 국가문화유산포탈, "문화유산검색",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DivView1.do?pageNo=5_1_3_0〉, 검색일 : 2019. 6. 20.

4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kr/ directory〉, 검색일 : 2019. 10. 3.

| | | | |
|---|---|---|---|
| | 놀이(A41C) | 세시풍속/놀이 (A41C 13/) | •세시의례, 생업세시, 세시음식, 세시놀이, 축제, 행사 등 |
| | | 여가(A41C 15/) | •휴식, 오락, 유람, 취미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종교/점복/풍수지리 (A41D) | 종교/신앙(A41D 21/) | •마을신앙, 가신신앙, 무속, 불교, 도교, 증산교, 천도교, 동학 등의 지식체계 |
| | | 점복/운세(A41D 23/) | •점성술, 사주, 궁합, 운세, 해몽, 신수 등의 지식체계 |
| | | 풍수지리(A41D 25/) | •양택풍수, 음택풍수, 비보풍수 등의 지식체계 |
| | 공연/무예 (A41E) | 음악(A41E 31/) | •민속음악(민요, 잡가, 놀이요, 판소리, 농악), 풍류음악(풍류, 가곡, 가사, 시조창), 궁중음악(향악, 당악, 군악), 종교음악(무속, 불교, 유교, 제례악) 등 |
| | | 무용(A41E 33/) | •민속무용(농무, 굿춤, 탈춤, 놀이춤, 소리춤, 허튼춤), 궁중무용(향악정재, 당악정재), 의식무용, 교방무용, 부채춤 등 |
| | | 민속극/연희(A41E 35/) | •탈놀이, 인형극, 재담극, 다시래기, 잡색놀음, 창극, 잡희 등 |
| | | 무예/수련(A41E 37/) | •택견, 국궁, 검법, 권법, 24반무예, 마상무예, 불무도, 선무도, 양생술 등 |
| | 공예/미술 (A41F) | 공예(A41F 41/) | •나무, 돌, 금속, 종이, 피모, 섬유, 짚풀, 도자, 화각, 나전, 자수, 매듭, 단청, 칠 등 |
| | | 서화/문양(A41F 43/) | •민화, 문인화, 산수화, 풍속화, 벽화, 암각화, 명문, 서각, 혁필, 부적, 문양 등 |
| | 언어표현/구비전승 (A41G) | 언어전승(A41G 51/) | •방언, 일상어, 의례어, 궁중어, 반가어, 은어, 속어, 금기어, 길조어, 문자 등 |
| | | 구비문학(A41G 53/) | •신화, 전설, 민담, 민요, 동요, 무가, 속담, 수수께끼, 재담, 만담 등 |
| | | 기록문학(A41G 55/) | •시, 시조, 소설, 간찰, 언문, 가사, 일기, 자서전, 기행문, 낙서, 비문 등 |
| | 기타(A41Z) |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문화 관련 지식 및 기술 | |
| 과학/군사 (A42) | 과학기술 (A42B) | 천문(A42B 11/) | •시간측정, 기상관측, 성좌관측, 천문도, 역법 등 지식체계 |
| | | 지리(A42B 13/) | •지리지, 지도, 방위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인쇄(A42B 15) | •목판, 금속활자, 필사, 제책 등의 방법과 기술 |
| | 건축/조선기술(A42C) | 건축/토목(A42F 41/) | •건축, 토목 관련 지식체계 |
| | | 조선(A42F 43/) | •조선 관련 지식체계 |
| | 교통/통신기술(A42D) | 교통로(A42C 21/) | •육로, 해로, 하천, 호수, 운하, 철로 등의 지식체계 |
| | | 운송(A42C 23/) | •육상운송, 해상운송, 여객운송, 화물우송 관련 지식체계 |
| | | 역참(A42C 25/) | •역, 원, 역원, 역마, 역전(驛田)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통신/신호(A42C 27/) | •파발, 봉수, 서신, 전신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군사기술 (A42E) | 군사시설(A42D 01/) | •성, 참호, 진지 등 군사시설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근력무기(A42D 31/) | •도검, 궁시, 모극, 타격기 등의 수련방법과 이용기술 |
| | | 화약무기(A42D 33/) | •총, 포, 탄환 등의 제작/관리/이용 |
| | | 깃발/표지(A42D 35/) | •깃발, 표지, 표시판, 인식표, 완장류 등과 관련된 지식체계 |
| | | 군사문헌(A42D 37/) | •병서, 진법도, 교범, 전단, 명령서, 증서, 일지 등 |
| | 기타(A42Z) |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학/군사 관련 지식 및 기술 | |

# Ⅴ. 결 론

2010년 10월 CBD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도 전통지식의 보호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 국제협약에 따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이하 "IPLC")가 없어 이익공유의 수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농업, 축산, 어업 등의 유전자원과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 관련 전통지식의 상당수를 중국과 공유하고 있어 분쟁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50] 이미 중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0여 개의 국가들은 출처공개 특허요건을 국내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기초하여 완성한 발명을 특허 출원할 때, 그 출처를 출원 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51][52]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전통지식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자원 발굴과 함께 DB구축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전통지식자원의 발굴과 DB구축,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3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kTKRC를 나고야의정서 등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설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전통지식의 개념과 범주를 고찰하였고, 국내 전통지식 관련 DB 운영기관의 다양한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반영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큰 폭으로 개정된 kTKRC 재설정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0) 류예리,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 권리 보호와 강화를 위한 국제적 합의 내용 및 주요 쟁점", 『국제법학회논총』, 제64권 제3호(2019), 95-132면.

51) 류예리,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출처공개 특허요건의 입법 유형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2018), 29-62면.

52)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 한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보호 전략", 『지식재산연구』, 제11권 3호(2016), 95-132면.

첫째, 기타 항목의 설정이다. 서브클래스 가장 마지막 항목에 '기타'를 추가하여 DB구축 과정에서 분류되지 못하는 전통지식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는 서브클래스 내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전통지식자원을 모아 놓은 후 일정한 그룹이 형성되면 추후에 분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둘째, 혁신적인 분류시스템 도입과 분류기호의 부여이다. 분류의 혁신성은 전통지식자원을 시설/인프라, 재배/생산, 서비스/활용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류기호를 구분한 데에 있다. 서브클래스는 분류기호 맨 뒷자리가 모두 알파벳 B부터 시작되는데 B는 '시설/도구/제도 등 인프라 관련 기술', C부터 O까지는 '재배/생산 관련 기술', P부터 Y까지는 '서비스/활용 관련 기술'로 구성하였고, 마지막 Z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항목에 부여하였다.

셋째, 분류체계의 확장이다. 생업기술에서는 농업/임업과 축산/잠업/양봉/어업/수렵으로만 구성되었던 클래스를 농업(A01), 임업(A02), 축산/양봉(A03), 양잠(A04), 어업/염업(A05), 수렵(A06), 광업(A07)으로 나누었으며, 생활기술에서는 서브클래스와 그룹을 전반적으로 확장하였다. 창조기술은 기존의 '문화적 창조기술'과 '제도적 창조기술' 클래스를 사회/문화(A41)와 과학/군사(A42)로 변경하였으며, 그룹 항목의 대부분을 서브클래스로 격상시키고 군사기술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넷째, DB구축 과정에서의 분류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구성항목과 정의'의 신설이다. 구성항목은 그룹에 해당되는 전통지식자원에 대한 예시로서 추후에 서브그룹을 구성할 수 있는 항목이라 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놓은 정의는 전통지식자원 발굴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사항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kTKRC는 1 섹션, 3 서브섹션, 13 클래스, 72 서브클래스, 172개 그룹의 분류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포용성, 확장성, 체계성, 편리성이 강화된 kTKRC는 전통지식자원의 발굴과 DB구축, 배포와 검색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고, 전통지식 관련 학술연구와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kTKRC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과정에서 형성된 전통지식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kTKRC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과 국가표준화 작업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통지식을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있다. 즉, 국제적으로 전통지식과 관련한 이익공유 요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경변화를 포용할 수 있도록 kTKRC를 개정한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CBD와 나고야의정서, WIPO의 논의를 살펴보면,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 그룹과 함께 이용국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고유의 전통지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전승해 온 의학지식, 농업지식, 생활지식, 민속표현물 등 수많은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수혜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IPLC가 없어 이익공유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kTKRC를 활용한 전통지식 DB가 이익공유에 기여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전통지식이 다른 나라의 특허에 도용되는 것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전통지식은 그 자체로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화 가능성이 높은 자원이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고 대를 이어 전승되면서 검증된 지식자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 속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면 벌써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전통지식이 위기에 처한 것도 사실이다. 전통지식 보유자들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여전히 기록되지 않은 채 그들의 손끝과 머릿속에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kTKRC가 전통지식자원의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효율적인 공유를 위해 널리 이용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수세기 동안 대를 이어 전승해 온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와 함께 산업적 · 문화적 활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단행본(국내 및 동양)〉

강방훈 외 5인(편), 『전통지식도 재산이다-전통지식자원의 권리화와 인증획득 방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0.

안윤수 외 4인, 『전통지식과 지식재산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09.

양대승, "무형유산의 개념과 특성", 아태무형유산센터(편),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동향과 과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10.

이철남,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지적재산권", 아태무형유산센터(편),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동향과 과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10.

〈단행본(서양)〉

Jonathan Curci,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Traditional Knowledge in International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Cambridge Intellectual Property and Information Law(Series 12), 2010.

〈학술지(국내 및 동양)〉

김병일 외 2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와 지적재산", 『산업재산권』 제21호(2006), 1-34면.

류예리,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출처공개 특허요건의 입법 유형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2018), 29-62면.

류예리,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 권리 보호와 강화를 위한 국제적 합의 내용 및 주요 쟁점", 『국제법학회논총』 제64권 3호(2019), 95-132aus.

박찬정 외 2인, "KNN을 이용한 융합기술 특허문서의 자동 IPC 분류",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3호(2014), 175-185면.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 한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보호 전략」, 『지식재산연구』 제11권 3호(2016), 95-132쪽.

이동수 외 3인, "지역 문화예술교육자원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문화산업연구』 제17권 제3호(2017), 75-84면.

장호수, "문화재 분류체계 시론", 『인문콘텐츠』 제4호(2005), 78-101면.

정명철 외 3인, "전통지식의 독자적 보호를 위한 국제 논의 고찰", 『농업사연구』 제11권 제2호(2012), 61-89면.

한지원 외 2인, "전통 민간요법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인문콘텐츠』 제30호

(2013), 249-269면.

〈인터넷 자료〉

국가문화유산포탈, "문화유산검색",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DivView1.do?pageNo=5_1_3_0〉, 검색일 : 2019. 6. 2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kr/ directory〉, 검색일 : 2019. 10. 3.

농촌진흥청,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http://koreanfood.rda.go.kr〉, 검색일 : 2019. 6. 20.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지식정보시스템 전통식품분류 검색", 〈https://www.tradifood.net/user/food/searchFoodClass.do〉, 검색일 : 2019. 6. 20.

한국전통지식포탈, "서비스 소개", 〈www.koreantk.com/ktkp2014/about/introduction.page〉, 검색일 : 2019. 10. 11.

TKDL, "About TKDL",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http://www.tkdl.res.in/tkdl/langdefault/common/Abouttkdl. asp?GL=Eng〉, 검색일 : 2019. 6. 20.

TKDL,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TKRC)",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http://www.tkdl.res.in/tkdl/langdefault/common/TKRC.asp〉, 검색일 : 2019. 6. 20.

WTO, "Draft Decision on Traditional Knowledge, annexed to WTO(IP/C/W/404)",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5.aspx〉, 검색일 : 2019. 6. 20.

WIPO, "Elements of a *Sui Generis* System for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IPO/GRTKF/IC/3/8),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s://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3/wipo_grtkf_ic_3_8.pdf〉, 검색일 : 2019. 10. 3.

WIPO, "Glossary of Key Term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WIPO/GRTKF/ IC/39/INF/7)",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26069〉, 검색일 : 2019. 9. 23.

WIPO,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s://www.wipo.int/ classifications/ipc/en/ITsupport/ Version

20190101〉, 검색일 : 2019. 6. 20.

WIPO, “Matter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An Overview (WIPO/GRTKF/IC/1/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4295&la=EN〉, 검색일 : 2019. 10. 3.

WIPO, “Review of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IPO/GRTKF/IC/3/7)”,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s://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3/wipo_grtkf_ic_3_7.pdf〉. 검색일 : 2019. 10. 3.

WIPO,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Revised Objectives and Principles (WIPO/GRTKF/IC/16/5)”,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s:// 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 id=132330〉, 검색일 : 2019. 9. 23.

〈연구보고서〉

농촌진흥청, “전통지식 자원 활용실태조사 보고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3.

안윤수 외 2인, “전통지식 분류체계 및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시험연구보고서-농촌자원개발연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6.

정재민 외 8인, “한국의 민속식물—전통지식과 이용”, 국립수목원, 2013.

조록환 외 6인,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방안 연구(시험연구사업보고서—농업환경연구)”, 국립농업과학원, 2013.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 전통지식 분류체계 조사 · 연구보고서”, 한국특허정보원, 2013.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 민간요법 발굴조사 보고서—경기도편”, 한국한의학연구원, 2016.

#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kTKRC)

Jeong Myeongcheol · An Oksun · Lee Hyeongyeong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in 1992, Traditional Knowledge has become spotlight intellectual property with economic value as it is urged to preserve and utilize Traditional Knowledge to preserve biod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organize the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 (kTKRC) developed b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2003 to properly assimilate to the environmental change surrounding Traditional Knowledge. As the Nagoya Protocol was adopted in 2010, attention for "genetic resources and the benefits from utilizing that knowledge" has increased resulting in expansion of the range of Traditional Knowledge. kTKRC reorganization process is based on the previous kTKRC. Also, the creation technique, which was the component that the previous kTKRC was lackluster in, has been massively expanded so that various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ige are transferred into Traditional Knowledge. As a result, the kTKRC was increased from 8 to 13 classes, 28 subclasses to 72, and 105 groups to 172 groups. Through the new, reorganized kTKRC in this study, we hope it becomes more convenient for us to find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build a database, managing and distributing it, thus protect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reinforcing industrial-cultural capabilities.

Keyword

Traditional Knowledge(TK),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TC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TKRC),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kTKRC), World Intellectual Disaster Organization(WIPO),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Nagoya Protocol